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서산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9. 16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변상(3명), 경고(4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☐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농신보 대손판정 불인정

○ 통지기간 도래일로부터 1월 내에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손판정 불인정됨.

☐ 외부감정평가 전산 무작위 의뢰 업무 소홀

○ 부적정하게 전산무작위 감정평가를 의뢰함.

< 관련법규 >

○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」 제1편 제1장 제1절 제12조(보증책임의 면책), 제1편 제4장 제2절 제3조(신용보증약관), 제1편제4장제3절제5조(면책기준)

○ 「신용보증약관(위탁보증용)」 제5조(통지의무), 제14조(면책사항)

○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, <별표1-1>외부감정평가 의뢰 기준표

○ 「조합감사-00284(2025.04.28.)」 외부감정평가 전산 무작위 의뢰 위규행위 감사 및 처분 계획 안내

○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 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 징계양정기준표

○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 업무처리규정」 제19조(변상책임의 발생요건)부터 제23조(변상판정 의결)까지